

의안번호	2202905
의 퇴 인	정일영의원
회 답 일	2024.9.13.
추계번호	24E28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학 전 아동 돌봄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신설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소득세 수입은 2026년 73억원 등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 399억원(연평균 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미취학 아동 돌봄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안 제59조의4)	-73	-75	-78	-83	-90	-399	-8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아이돌봄 서비스¹⁾ 이용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비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 적용 - (세액공제율) 해당 과세기관에 지급한 보육비의 20% - (한도) 취학 전 아동 1명당 연 500만원까지 인정	

1)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징수기준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추계기간으로 설정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이후 보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 2025년~2029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는 2026년~2030년 발생(징수기준)
- 개정안에 따른 공제대상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1명을 양육하는 3인 가구(일반가정)의 양육자, 공제대상 금액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금으로 가정
 - 개정안은 공제대상을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비’로 규정
- 2023년 기준 가구당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본인부담금)에 공제율(20%)을 적용하여 가구당 공제세액을 산정하고, 가구당 공제세액에 서비스 이용 가구 수 등을 적용하여 기준연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후, 서비스 이용 가구 수 증가율과 서비스 이용료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세수효과 추계
- 추계기간 동안 전체가구 중 근로자가구 비중(2023년 기준 61.7%) 및 과세대상근로소득 구간별 총 인원 대비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의 비중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제

- 추계기간 동안 연도별 서비스 이용 가구 수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서비스 이용 가구 수의 평균 증감율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
- 추계기간 동안 연도별 가구당 서비스 이용료(본인부담금)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시간당 이용단가의 평균 증가율에 따라 변동된다고 전제
 - 시간당 이용단가 중 본인부담 비중 및 가구당 서비스 이용시간은 2023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 개요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돌봄 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기관연계 서비스의 경우 비용부담자가 기관이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표 2]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대상

종류	대상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

주: 시간제서비스는 일반적인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기본형과,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도 제공하는 종합형으로 구분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서비스 이용료) 소득기준, 가구 특성(일반가정, 한부모가정 등)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차등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산정하고 정부에서 일정금액 지원하되, 시간제 서비스와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돌봄대상 아동의 취학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료 산정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고, 금액 구간별로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²⁾
 - 가형: 양육공백³⁾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인 가구
 - 나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가구
 - 다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라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초과하는 가구
- (아동 연령) 취학 여부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구분
 - A형: 2024년 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아동(미취학)
 - B형: 2024년 기준 2016. 12. 31. 이전 출생아동(취학)

[표 3]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일부)

(단위: 원)

구분	영아 종일제		시간제							
			기본형				종합형			
			A형		B형		A형		B형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9,886	1,744	9,886	1,744	8,723	2,907	9,886	5,224	8,723	6,387
나형	6,978	4,652	6,978	4,652	3,489	8,141	6,978	8,132	3,489	11,621
다형	2,326	9,304	2,326	9,304	1,745	9,885	2,326	12,784	1,745	13,365
라형	0	11,630	0	11,630	0	11,630	0	15,110	0	15,110

주: 일반가정, 영아 1명을 기준으로 한 요금표임

시간제 서비스는 일반적인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기본형과,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도 제공하는 종합형으로 구분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추계 방법

□ (가구당 서비스 이용료) 2023년 기준 가구당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본인부담금, 실적치)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2) 2023년 3인 가족 중위소득 기준, 가형 3,327,000원 이내, 나형 5,322,000원 이내, 다형 6,653,000원 이내, 라형 6,653,000원 초과

3)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 2023년 기준 가구당 본인부담금은 영아종일제의 경우 소득유형별로 230만원~1,080만원, 시간제의 경우 소득유형별 150만원~390만원, 질병감염 아동지원의 경우 소득유형별 8만원~22만원으로 각각 추산
 - 시간제 서비스와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아동의 취학여부에 따라 A형(취학 전)과 B형(취학 후)으로 구분되나 소득기준 외 A형/B형에 따른 구분 통계가 부재하여 통계청의 2023년 주민등록연앙인구 상 만 12세 이하 인구(아이돌봄 서비스 전체 대상) 중 만 7세 이하 인구 비율(52.5%)을 적용하여 총 본인부담금 및 가구 수 추정

[표 4] 2023년 기준 취학 전 아동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본인부담금)

(단위: 백만원, 가구)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전체
영아 종일제	총 본인부담금(A)	2,882	2,027	390	1,815	7,115
	총 가구 수(B)	1,231	440	36	183	1,890
	가구당 본인부담금(A/B)	2.3	4.6	10.8	9.9	3.8
시간제	총 본인부담금(A)	25,721	19,478	6,095	18,600	69,894
	총 가구수(B)	17,171	8,386	1,662	4,775	31,995
	가구당 본인부담금(A/B)	1.5	2.3	3.7	3.9	2.18
질병감염 아동지원	총 본인부담금(A)	118	134	38	108	398
	총 가구수(B)	1,545	834	172	594	3,145
	가구당 본인부담금(A/B)	0.08	0.16	0.22	0.18	0.13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가구당 공제세액) 가구당 본인부담금에 공제율(20%)을 곱하여 가구당 공제세액을 산출하되, 가구당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동 1명당 보육비 지출액 한도)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에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세액 산출
 - 다만, 공제세액이 해당 소득유형이 포함되는 과세대상근로소득구간의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결정세액만큼만 공제
 - 2023년 3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부터 라형까지에 해당하는 월소득 구간을 연간소득으로 환산(월소득×12개월)한 후, 해당 연간소득이 포함되는 과세대상근로소득 구간의 1인당 결정세액 산출

[표 5] 2023년 기준 가구당 연간 서비스별 소득유형별 공제세액 추정
(단위: 만원)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전체
소득 및 세액	월소득 ¹⁾	0~333	333~532	532~653	653~	—
	연간소득 환산	0~3,996	3,996~6,384	6,384~7,836	7,836~	—
	결정세액 ²⁾ (A)	33	169	382	1,885	—
영아 종일제	가구당 본인부담금(B)	230	460	1,080	990	380
	공제대상액 (C)=min[500, B]	230	460	500	500	380
	공제세액 min[A, (C×20%)]	33	92	100	100	76
시간제	가구당 본인부담금(B)	150	230	370	390	218
	공제대상액 (C)=min[500, B]	150	230	370	390	218
	공제세액 min[A, (C×20%)]	30	46	74	78	44
질병감염 아동지원	가구당 본인부담금(B)	8	16	22	18	13
	공제대상액 (C)=min[500, B]	8	16	22	18	13
	공제세액 min[A, (C×20%)]	1.6	3.2	4.4	3.6	2.6

주: 1) 월소득은 각 소득유형별 2023년 3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수치임

2) 2022 귀속연도 기준 「국세통계연보」의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 구간별 1인당 결정세액
(‘가’: 4천만원 이하, ‘나’: 4천만원~6천만원, ‘다’: 6천만원~8천만원, ‘라’: 8천만원 초과)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가구 내 근로소득자 비율) 통계청의 2023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가구 중 근로자가구⁴⁾의 비중은 61.7%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가구 중 근로소득자 비율 추정

□ (근로소득자 중 과세대상자 비율) 2023년 「국세통계연보」 상 과세대상 근로소득 구간별 총인원 대비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의 비율을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가구 내 근로소득자 중 과세대상자 비율 추정

- 2023년 3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부터 라형까지에 해당하는 월소득 구간을 연간소득으로 환산(월소득×12개월)한 후, 해당 연간소득이 포함되는 과세

4) 정부, 기업, 타가구에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가구로, 사무직가구와 생산직가구의 합으로 구성

대상근로소득 구간의 총인원 대비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의 비율 계산

- 근로소득자 중 과세대상자 비율은 가형 48.5%, 나형 93.1%, 다형 99.3%, 라형 99.9%로 나타남

－ 추정된 비율이 향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제

[표 6] 2023년 기준 소득유형별 서비스 이용가구 내 근로소득자 중 과세대상자 비율
(단위: 만원, %)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전체
월소득 ¹⁾	0~333	333~532	532~653	653~	—
연간소득 환산 (과세대상근로소득)	0~3,996	3,996~6,384	6,384~7,836	7,836~	—
과세대상자 비율 ²⁾	48.5	93.1	99.3	99.9	66.5

주: 1) 월소득은 각 소득유형별 2023년 3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수치임

2) 2022 귀속연도 기준 「국세통계연보」의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 구간별 과세대상자 비율
(‘가’: 4천만원 이하, ‘나’: 4천만원~6천만원, ‘다’: 6천만원~8천만원, ‘라’: 8천만원 초과)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준연도 세수효과) 가구당 공제세액에 서비스 이용가구수, 이용가구 내 근로소득자 비율, 근로소득자 중 과세대상자 비율을 각각 곱하여 추계한 2023년 기준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7] 2023년 기준 세수효과

		가형	나형	다형	라형	합계
영아 종일제	공제세액(A, 만원)	33	92	100	100	
	서비스 이용가구수(B)	1,231	440	36	183	
	근로소득자 비율(C)	61.7%	61.7%	61.7%	61.7%	
	과세대상자 비율(D)	48.5%	93.1%	99.3%	99.9%	
	세수효과 (A×B×C×D, 백만원)	122	233	22	113	489
시간제	공제세액(A, 만원)	30	46	74	78	
	서비스 이용가구수(B)	17,171	8,386	1,662	4,775	
	근로소득자 비율(C)	61.7%	61.7%	61.7%	61.7%	
	과세대상자 비율(D)	48.5%	93.1%	99.3%	99.9%	
	세수효과 (A×B×C×D, 백만원)	1,540	2,238	747	2,293	6,816
질병감염 아동지원	공제세액(A, 만원)	1.6	3.2	4.4	3.6	
	서비스 이용가구수(B)	1,545	834	172	594	
	근로소득자 비율(C)	61.7%	61.7%	61.7%	61.7%	
	과세대상자 비율(D)	48.5%	93.1%	99.3%	99.9%	
	세수효과 (A×B×C×D, 백만원)	7	15	5	13	40
합 계						7,346

- (연도별 서비스 이용가구수 변화율) 최근 3년간(2021~2023년) 서비스 유형별·소득기준별 가구수 추이에 따라 평균 변화율을 산출하고, 평균 변화율에 따라 매년 일정하게 서비스 이용가구수가 변화한다고 가정
- 변화율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제

[표 8]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별 이용가구수 추이
(단위: 가구, %)

		2021	2022	2023	평균 변화율
영아 종일제	가형	1,622	1,779	1,231	-12.9
	나형	791	708	440	-25.4
	다형	89	56	36	-36.4
	라형	325	217	183	-25.0
시간제	가형	28,415	30,321	32,707	7.3
	나형	15,437	14,066	15,973	1.7
	다형	3,969	3,014	3,166	-10.7
	라형	13,292	9,567	9,096	-17.3
질병감염 아동지원	가형	1,106	2,060	2,943	63.1
	나형	516	1,056	1,589	75.5
	다형	179	261	327	35.2
	라형	614	793	1,132	35.8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서비스 이용료 증가율)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시간당 서비스 이용단가 추이에 따라 평균 증가율을 산출하고, 증가율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가 증가한다고 가정
- 증가율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제

[표 9]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
(단위: 원)

	2022	2023	2024	평균 증가율
영아종일제	10,550	11,080	11,630	5%
시간제	12,135	12,740	13,370	5%
질병감염아동지원	12,660	13,290	13,950	5%

주: 일반가정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의 경우 기본형 요금과 종합형 요금의 평균금액임

- (향후 5년간 세수효과) 2023년 기준 세수효과에 연도별 서비스 이용 총 가구수 증가율과 서비스 이용료 증가율을 적용하여 향후 5년간 세

수효과 산출

[표 10] 2025년~2029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세액공제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영아 종일제	가형	102	93	85	78	71
	나형	143	112	88	69	54
	다형	10	7	4	3	2
	라형	70	55	43	34	27
	계	324	267	221	184	154
시간제	가형	1,952	2,199	2,476	2,788	3,140
	나형	2,551	2,724	2,908	3,105	3,315
	다형	656	615	577	541	507
	라형	1,729	1,501	1,303	1,132	983
	계	6,888	7,038	7,264	7,566	7,945
질병감염 아동지원	가형	21	36	61	104	179
	나형	52	96	177	325	599
	다형	9	13	19	27	38
	라형	27	38	55	78	111
	계	109	183	311	535	927

다. 추계결과

- (소득세수 변화) 개정안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소득세 수입은 2026년 73억원 등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 399억원(연평균 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미취학 아동 돌봄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안 제59조의4)	-73	-75	-78	-83	-90	-399	-80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